

# 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비용 지원사업 참여 안내

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라북도 내 소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 성능 및 성분분석 등을 위해 2022년 시험분석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도내 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2년 1월 27일  
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

## 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2022년 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시험분석비용 지원사업

□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1월

□ 지원대상 : 도내 소재<sup>1)</sup>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<sup>2)</sup>

1) 본사 및 공장이 도내 소재

2)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‘별표3’ 업종별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

□ 지원규모 : 총 200백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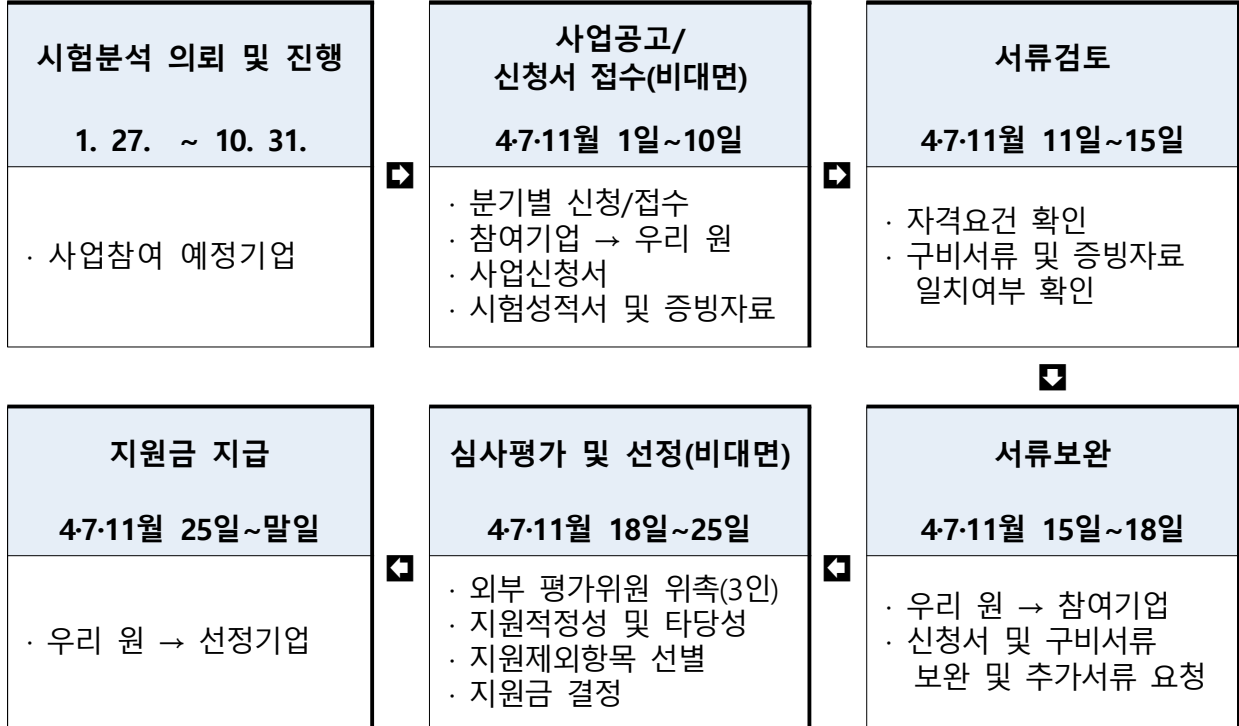
○ 기업당 2백만원 한도 / 120개 기업 정도

○ 지원한도 : 시험분석비용의 80%(VAT제외, 자부담 20% 별도)

□ 지원 및 지원제외 항목

구분	내 용	지원 횟수	비고
지원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제품 성능 또는 성분 분석</li><li>위해요소, 세균, 미생물 검사, 중금속 검사, 잔류농약 검사</li><li>영양성분 분석(식품)</li><li>HACCP 유효성 평가(식품, 식품가공)</li><li>세탁 건뢰도(의류), 신뢰성 시험</li></ul>	한도금액 내 연 최대 2회	기업당 2백만원 한도 (부가세 제외)
지원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원·부자재 시험분석</li><li>수질분석</li><li>자가품질 검사, 참고용 검사</li></ul>		

## □ 추진절차 및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세부내용은 각 시기별 사업공고 내용을 참고

○ '22. 1. 27. 이후 시험분석기관 의뢰건에 한해 신청 및 지원대상 유효

- '22. 1. 27. 이전 분석의뢰 건 지원 제외

- 사업연도 이전 시험분석건 지원 제외

○ 참여기업 모집공고 : 3·6·10월 1일 ~ 말일(1~3차)

○ 신청서류 제출 : 모집공고 익월 1 ~ 10일(4·7·11월)

○ 심사평가 및 선정

- 외부 평가위원 위촉

- 분석결과 활용성, 지원의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

- 지원 금액 결정(부가세 및 자부담 20% 제외, 한도금액 내 전부 또는 일부)

- 지원대상 선정 공고 :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( '지원사업공고' )

## □ 지원내용

### ○ 지원 및 지원제외 항목

구분	내 용
지원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제품 성능 또는 성분 분석 : 모든 업종</li> <li>▪ 위해요소, 세균(대장균), 미생물 검사, 중금속 검사, 잔류농약 검사 : 식품제조 및 가공 업종</li> <li>▪ 영양성분 분석 : 식품제조 및 가공 업종</li> <li>▪ HACCP 유효성 평가 : 식품제조 및 가공 업종</li> <li>▪ 세탁 건뢰도, 섬유의 조성 및 혼용율 분석 : 의류제조업종</li> <li>▪ 신뢰성 평가 : 모든 업종</li> </ul>
지원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원·부자재 시험분석 : 직접 생산 및 가공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원·부자재</li> <li>▪ 수질분석</li> <li>▪ 참고용 검사, 자가품질검사 : 대외 활용목적이 아닌 내부 활용목적의 검사분석</li> </ul>

### ○ 지원금액

- 기업당 2백만원 한도(연내 신청횟수 제한 없음)
- 시험분석비용의 80%(부가세 제외, 20% 신청기업 부담)

## □ 지원제외 및 지원제한

### ○ 지원제외대상

- 최근 5년간(2017~2021년)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시험분석 지원사업 3회 이상 참여기업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사람 또는 기업  
(단, 사업신청 전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지원 가능)
- 민사집행법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기업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사람 또는 기업  
(단,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)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이상, 유동비율인 연속 50% 이하인 기업
- 자본 전액 잠식 기업(단,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)
- 개인회생·파산 면책권자

### ○ 지원제한

- 지원한도금액(2백만원) 내 지원 :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
- 순수분석 외 비용(부가세, 기본료, 우송료, 전처리비, 검사자 인건비)은 제외
- 다수기업 동일 대표자인 경우 1개 기업만 지원

3

##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평가

## □ 사업참여 신청

- 신청기간 : 4·7·11월 1일 ~ 10일

- 신청방법 : E-Mail 접수 또는 우편 접수
- 선정방법 : 1차 서류검토(자격요건 및 구비서류) → 2차 서면평가(비대면)

## □ 선정평가

- 평가기준
  - 3개 부문별 평가항목에 배점을 부여하여 종합평가
  - 각 항목별 득점을 종합한 평균점수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
  - 평가 합산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

### ○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부문	평가항목	배점
시험분석 적정성	시험분석의 필요성, 분석내용의 적정성	20
시험성적 결과 활용	성분 및 성능 기준적합도 판정 결과, 품질향상, 제품인증 등	40
기타 활용 효과	제품개발, 공정개선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, 기술이전 등	40

- 평가방법 :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(외부 평가위원 3인)

## 4

##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
### 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별첨 서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험분석비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[서식1]</li> <li>▪ 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」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1부[서식2]</li> <li>▪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[서식3]</li> <li>▪ 지원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[서식4]</li> </ul>
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사업자등록증 1부</li> <li>▪ 통장사본(사업자용) 1부</li> <li>▪ 시험분석비용 이체확인증 또는 입금증 사본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</li> <li>▪ 세금계산서(분석기관 발행)</li> <li>▪ 시험분석 견적서(분석기관 발행)</li> <li>▪ 시험분석 의뢰서</li> <li>▪ 시험성적서</li> <li>▪ 중소기업 확인서 1부</li> <li>▪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</li> <li>▪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(건축물 용도 : 공장/제조업소 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: 해당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전부 제출</li> <li>- 외주생산의 경우 : OEM생산계약서 및 생산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</li> <li>- 연구기관 및 시설 입주기업의 경우 : 기관 및 시설 입주계약서(또는 확인서)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※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(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) 제1항 적용</li> <li>- 소기업 중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/사업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: "사업자등록증"을 공장등록 증명서류로 인정</li> <li>▪ 최근 3개년(2019~2021년)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</li> <li>▪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최근 신고분)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(신청월 기준 발급)</li> <li>▪ 소득금액증명원(개인사업자)</li> </ul>

- 제출처 :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 
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1층 자금기술팀  
E-Mail : [kwh2017@jbba.kr](mailto:kwh2017@jbba.kr) 문의 : 063-711-2052
- 제출방법 : E-Mail 또는 우편접수(우편접수 시 4부 제출)

<b>E-Mail 제출시</b>	▪ 모든 제출서류를 <b>PDF 하나의 파일로</b> 송부
	▪ 파일명 : <b>기업명_시험분석비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</b>

## 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질의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답변하며, 이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으로 함



## 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」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

목적

-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제정보의 수집·활용

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① (이력정보)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
- ② (과세정보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“매출액, 개업일, 휴업기간, 폐업일”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“수출액” 에 한함

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동의 효력기간

-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,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
  - \*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
  - \*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수혜기업의 사업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
  - \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신청기업명 ○○○○○

대표자 ○○○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[서식 3]

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「2022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개인정보 제공 목적	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보유·이용 기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신청 및 평가, 사업 운영</li> <li>-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홍보 및 마케팅</li> <li>- 정책홍보 안내</li> <li>- 연계지원 및 지원업체 관리 등</li> </ul>	<u>성명, 대표자연락처, 주소, 사업자등록 정보 등</u>	5년

\*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,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,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.

※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스타소상공인 평가·선정 제한,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  미동의

## 2.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받는 자	개인정보 이용 목적	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보유·이용 기간
<u>전라북도</u>	전라북도 지원사업 운영, 정책홍보, 자금지원	<u>성명, 대표자연락처, 주소, 업력,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</u>	5년
<u>진흥원과 협약/계약 체결 및 발주 요청 기관/기업</u>	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등	<u>성명, 대표자연락처, 주소, 업력,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</u>	<u>협약·계약 종료일까지</u>

\*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,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스타소상공인 평가·선정·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, 홍보·마케팅 지원, 현판 설치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  미동의

2022년    월    일

업체명 : \_\_\_\_\_

대표자 : \_\_\_\_\_ (서명/인)

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

[서식 4]

## 지원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
■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유무에 체크(✓)바랍니다.

검 토 내 용	해 당	해 당 없 음
<input type="checkbox"/> <b>의무사항 불이행 여부</b> ▶ 협업기관, 참여기업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		
<input type="checkbox"/> <b>참여제한 여부</b> ▶ 협업기관, 참여기업, 협업기관의 장, 참여기업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<국가연구 개발사업>에 참여 제한 중인지 여부 ▶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협업기관, 참여기업, 협업기관의 장, 참여기업 대표, 총괄책임자 등이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		
<input type="checkbox"/> <b>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</b> ▶ 기업의 부도 ▶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▶ 민사집행법에 기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집중기관(은행연합회 등)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▶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 ▶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) ▶ 자본전액잠식 (단, 창업2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) ▶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<미반영> 또는 <부적정>인 경우 ▶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인 경우		

신청기업명 :

(직인)

기업대표자 :

(인)